

#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 일반약관

제 1조(총칙) 주식회사 피엔알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와 계약자\_\_\_\_\_ (이하 "매도인" 이라 한다)는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서 (이하 "계약서" 라 한다) 에 기재한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 2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사양서, 설계도면, 설비 및 기기구매계약 일반약관, 특별약관(윤리특별약관 포함), 특별조건, 입찰유의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구성되며, 매도인도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 (구두발주금지)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기술자료"를 계약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기술자료 요구서[첨부 2]"에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매수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약관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매도인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매도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항 또는 나.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매도인의 정보·자료로서 매도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③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을 의미한다.
  - 가. 매도인이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나. 매도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다. 매도인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라. 매도인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마. 매도인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④ 계약사양서 및 설계도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즉시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 매도인 합의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공동수급의 경우, 도급인의 계약서에 첨부하여 전자서명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사간 상호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3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보증금 등 구비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산출내역서까지 구비서류에 포함시켜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 내용이 "경영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에게 "경영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조(채권양도의 금지) ①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승인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계약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은 경우 정산 완료 전에는 채권 양도할 수 없다.

제 5조(계약보증금) ① 매도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채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같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이 특별한 사유로 대체 납부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을 제1항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보증금의 처리) ① 제33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매수인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대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선금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제 7조(제작사양서 및 도면의 제출) ① 매도인은 계약사양서 상의 제출자료(공정계획서, 승인사양서, 승인도면, 최종제작도면 및 최종조립도면 등을 포함한 준공도면)를 작성하여 계약사양서상 명기된 제출기한에 맞춰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출자료를 적기에 미제출하는 경우, 첨부에서 정하는 기타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계약사양서 상의 제출자료가 “기술자료”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에게 “기술자료”나 “경영상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매수인은 제작사양서 및 도면, 공정계획서 등을 접수 후 소정기간내에 검토 승인하고 계약물품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수정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규정에 따라 매수인의 승인을 받은 설계 도면, 시방서, 사양서, 기타 자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누락, 오류, 설계 및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출한 도면에 대해서는 외부유출 및 불법도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료 요구서”에서 정한 매도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및 폐기에 대한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용재료) ①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 및 계약사양서에 정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조(납품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 ①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매도인의 계약물품의 제작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②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를 전문 감정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항목 및 일정 등을 매수인과 협의하여 제작중간검사 계획을 작성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주요 구성품 조립 전 매수인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중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수 조서의 일부분으로 보관한다.

⑤ 매도인은 공정계획서에 따라 매 월말 제작진도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수자는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한 전문용역회사에 위임하여 상주관리 또는 공정monitoring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⑦ 매도인은 계약된 품목의 검사결과 동일품목의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불합격 또는 검사 미준비로 인한

검사취소가 2회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2회 검사분부터 추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자의 직접경비를 부담한다.

제 10조(기술지도) ①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장소 (공사현장등)에 반입한 때부터 성능검사 및 시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술지도원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 성능검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②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지도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되,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1조(납품 및 검수) ① 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검수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납기 1개월 이상 조기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반입검사에 합격하여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되며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쌍방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검수규정에 의한다.

③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납품검수를 받을 때에는 다음 문서를 매수인의 검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및 검수의뢰서
2. 물품반입 증명서
3. 물품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4. 각종시험 및 시운전 기록(검사완료증명서등)
5. 조립 및 설치기록
6. 최종 완성 도면
7. 보존 및 사용에 관한 취급 설명서

④ 제3항의 문서에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검사를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조작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경,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⑦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⑧ 매도인은 반입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반입 가능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성능검사 및 시운전) ① 성능검사 및 시운전은 매도인이 제출하여 매수인이 검토 승인한 성능검사 및 시운전 요령서에 의하여 매도인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설치 완료 후 매수인이 요구하는 성능검사 개시일로부터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Plant설비에 대하여는 예비수락검사(PAT) 및 최종성능검사(FAT)로 구분 실시 한다.

제 13조(성능검사 불합격시의 처리) ① 매도인은 소정 기간 내 성능검사에 불합격할 시는 경과분에 대하여 제21조에 의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Plant설비에 대한 예비수락검사(PAT), 최종성능검사(FAT) 불합격시에는 제1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07.12.7 개정)

제 1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매도인은 물품의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최종 납품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현금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의 성능보장, 하자보수 또는 대물충당 요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불응할 때에는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매수인은 제3자에게 시공 또는 납품시킬 수 있다.

③ 하자보증 기간중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은 보상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매도인은 계약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의 적치 유무에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은 필요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을 기종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대물충당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최초의 납품과 같은 조건의 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 ⑥ 보증기간 경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공급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다. 다만, 매도인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After service)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보수대책을 매수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파견 및 대치품의 제공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정 기일 내 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제 16조(배상책임) 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의 건설공정 또는 조업상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 등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도인의 손해는 제21조(지체상금)에 따른 손해액과 별도로 한다.

② 만약 계약서상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 일방이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할 경우, 매도인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그 제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 17조(표지) ① 매도인은 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개의 물품포장 외부 또는 용체(포장하지 않는 물품)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또는 부호
2. 매수인이 정하는 설비 식별 부호
3. 품명
4. 단위
5. 용적 및 중량
6. 취급상의 주의 표지
7. 하중 중심점 표지
8. 제작자 및 공급자명
9. 하수자명
10. 포장 및 검사 일자
11. 계약번호

② 제1항의 표지는 포장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포장도 할 수 없고 용체에 표시할 수도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명기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제 18조(보존조치) 매도인은 계약물품에 따라 수송, 저장 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합한 포장 및 하역조작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식 및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하도급의 금지) ① 매도인은 계약품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부품의 Sub Maker 선정 포함)이 필요할 시는 계약물품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매수인과 상호협의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설비 품질불량 예방을 위해 계약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는 하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첨부. 하도급 일괄발주시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매수인은 하도급 승인이 계약물품의 제작 및 성능 보장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일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라도 본 계약이행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비파괴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결과와 신뢰도 보장을 위해 매수인이 정한 비파괴검사업체 Sourcing Pool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대금지불) ① 매도인은 납품을 완료한 후 제 11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매도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기간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란 계약체결시점 및 대금지급시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대상 기업은 동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한다.

제 21조(지체상금) ① 매도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07.12.7개정)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상기 지체된 부분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이 다른 설비와 상호연관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별 품목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기간 내(PAC발급기한내)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주수 1주(7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만 상기 각호의 지체상금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대상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지체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제 22조(비밀정보의 정의)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계약서 체결 사실 자체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 2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 ①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매수인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매도인이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매도인이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매수인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 24조 (비밀정보의 사용과 제한)

- ①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목적범위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은 계약서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및 하청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함) 이외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매수인과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④ 매도인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비밀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점검을 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매수인은 전항의 점검결과 등으로 매도인의 비밀정보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매도인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매수인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매수인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6조 (상호협의 진행상황 등의 공개금지)

매도인은 그 시점을 불문하고 계약서와 관련하여 상호협의 사실과 그 진행상황 등 일체의 정보를 매수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서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7조 (지적재산권)

① 계약물품이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독창적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반영된 계약사양서, 설계도면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인 경우, 계약물품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매도인이 보유 또는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됨으로써 계약물품 관련 지적재산권이 계약물품에 적용된 매수인의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진보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이하 “개량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단순히 매수인의 설계도면 등에 따라 단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기술 등이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양 당사자는 “개량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개량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물품에 적용된 매도인의 기술이나 디자인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물품에 사용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여,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임직원이 당해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경우, 개량된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그 대가로서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의 제작, 설치, 시운전 등에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항이나 디자인을 개발 또는 개선시키는 경우, 그러한 기술적 사항이나 디자인 등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의하여 그 개발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권리화 여부 및 권리귀속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설비를 제작, 납품함에 있어 매수인이 소유한 특허나 노하우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 실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 28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매도인은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서가 종료된 경우, ii)계약서의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도포기된 경우, iii)매수인이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그에 대한 복사물 포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30조(하도급사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한 공급사의 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설계, 제조 등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매도인은 하도급사로 하여금 매수인의 영업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하도급사 및 그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영업비밀유지 약정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1조(계약변경) ① 매수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작에 착수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전의 계약수량의 증감량 조정
2. 설계변경
3. 납기조정

② 수량의 증감량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매도인이 제출하여 매수인이 승인한 제작도면 및

가격산정내역서에 의하여 매수인, 매도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납기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출하여 매수인이 승인한 산정내역서상의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④ 계약체결 60일후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대비 총 계약금액의 5/100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2010.4.16부 시행)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공요금, 운임 등)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제 32조(사급자재) ① 계약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재료의 일부를 매수인이 사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인수장소를 결정하고 인수후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②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인수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공정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승인없이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물품의 납품과 동시에 매도인은 사급자재의 수량, 사용 및 잔량의 명세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은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급자재 잔량의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잔량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계약시점 물가를 곱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계약물품의 최종 납품기일 이전 까지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32조의2 (매도인의 재무상태 통지의무) ① 매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기간 중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경우

2. 매도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매도인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매도인은 전항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그 통지 후 지체없이 매도인의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추가담보 제공 기타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 매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동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여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공정계획대로 공정을 진행시키지 않아 납기 지연이 확실시 되거나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2. 매도인이 납품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사양서, 제작도면 및 기타 약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

3. 매도인이 계약 이행상 매수인의 감독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는 때

4. 매도인이 제32조의2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2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매도인이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하거나 매도인에 대한 지급정지, 강제집행 개시, 영업정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5호의 사유 또는 가압류, 가처분, 매도인의 상당히 악화된 재무상황, 기타 매도인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환경보전 관련법령에 직·간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생산 및 상거래 질서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8. 매수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30/100 이상 감소하거나, 연기된 납기가 당초 납기의 2배 이상이 되어 매도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제 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선급금 또는 중간불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인수할 수 있다.
- ④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도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귀책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매도인은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자재의 잔여분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34조(매도인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매수인은 [첨부1] 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를 한 매도인(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 포함)에 대해 발생 즉시 해당 계약건을 해지하고 계약불이행 공급사는 해당 SG을, 부정당행위 공급사는 모든 SG의 입찰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취소한다.

또한 금품제공 등 비윤리행위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수인 회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전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행위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해당 매도인과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1.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회사·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단체의 구성원(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3.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회사·법인 기타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④ 매수인이 매도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그룹사와 상호 교환할 수 있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⑤ 매도인이 포스코그룹사에서 제1항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공급사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통합구매 참여그룹사가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를 이유로 해당 소싱그룹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매도인은 통합구매조직에서 수행하는 해당 소싱그룹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⑦ 매도인이 계약체결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 35조(면책조항) 매도인은 계약물품과 관련하여 당사자 중 일방과 제 3자 사이에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권 및 상표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으로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6조(감액 및 환불)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 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의 적용이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 지불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및 환수 해당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 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수인과 합의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7조(제법령 및 제규정의 준수) ① 매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의 위반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및 관련 책임을 진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매수인의 제반규정(하도급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매도인은 매수인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8조(공사장 처리) ① 매도인은 공사현장 주변을 항시 정리하여 시공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제1항의 작업장 정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잔여품을 수집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제3자에게 정리 시킬 수 있다.

제 39조(안전관리) ① 매도인은 본 계약물품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일체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안전관리에 있어 매수인의 사용권한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기인하거나 매수인의 재해예방 조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 40 조(재해보상 및 보험) ① 매도인은 본 계약물품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수인의 종업원 또는 제 3 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매수인의 재해원인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②매도인은 그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납입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시 계상된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매도인으로 하여금 기타 보험에 부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 41조(상계)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는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환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사이율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2조(계약의 효력) 계약서는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비밀정보와 관련한 계약서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3조(일부 무효의 특칙)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4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협의,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라 해결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 11. 01부터 개정,시행한다.

[첨부 1]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제재 기준

구분	심사항목	제재기간
계약 불이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오투찰은 제외)	6개월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싱그룹만 3개월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POSCO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6개월 3개월
	-매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한 자재규격서, 도면 등과 상이하게 물품을 제작하여 설비사고를 유발한 경우	1년
	-기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최고 1년
	부정당 행위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2년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2년
○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물품구매는 제재대상 제외) - 1차 위반 - 2차 위반		3개월 2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3년 1년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6개월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
○ 매수인의 입찰, 협상, 검수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1년
○ 부정당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 납품하여 시정권고를 받은후 시정권고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년
○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5조)시 - 1백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백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년 3년 1년
- 중고품을 납품하거나 제조 Maker를 상이하게 납품한 경우 : 2년		2년
-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한 '공급사 행동규범' 위반으로 중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 : 2년		2년

- |                                                                                                                                    |                       |
|------------------------------------------------------------------------------------------------------------------------------------|-----------------------|
| <p>○ 청탁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적정 거래 성사시</li><li>- 부적정 거래 미성사시</li></ul> | <p>2년이하<br/>6개월이하</p> |
|------------------------------------------------------------------------------------------------------------------------------------|-----------------------|

posco  
PNR